변경대비표

변경시행일: 2024년 10월 31일

칸서스하베스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규약 변경 내역

1.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일부문구 보완

2. 오기정정

항목	정정전	정정후
1.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일부문구 보완	제6조(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신탁원본의 가액**<신설>**은 1좌당 1원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수익증권좌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설정할 수 있는 수종의 수익증권 총좌수는 10조좌로 한다.	제6조(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신탁원본의 가액**(이하 "신탁원본액"이라 한다)**은 1좌당 1원을 기준으로 **제28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종의 수익증권 총좌수는 10조좌로 한다.
1.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일부문구 보완	제8조(신탁금의 납입)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 제6조의 **신탁원본의 가액**에 해당하는 투자신탁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기재생략)	제8조(신탁금의 납입)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 제6조의 **신탁원본액**에 해당하는 투자신탁금을 **금전으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금전으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현행과 동일)
1.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일부문구 보완	제13조(자산운용지시등) ①(기재생략) 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당해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신설>** ③~④(기재생략)	제13조(자산운용지시등) ①(현행과 동일) 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당해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④(현행과 동일)
1.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일부문구 보완	제20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①~④(기재생략) ⑤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자기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투자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 중 금융기관에 예치한 총금액 또는 단기대출한 총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1.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재산을 투자대상자산에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신탁업자가 자신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경우** **2. 금융기관에의 예치** **3. 단기대출** **4.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통화를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경우(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거래를 포함한다)** ⑥~⑦ (기재생략)	제20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①~④(현행과 동일) ⑤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자기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투자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⑦ (현행과 동일)

1.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일부문구 보완	제21조(운용행위 감시의무 등) ①(기재생략) 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시행령 제269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법시행령 제269조제2항 본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③~⑤(기재생략)	제21조(운용행위 감시의무 등) ①(현행과 동일) 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시행령 제269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법시행령 제269조제2항 본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③~⑤(현행과 동일)
1.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일부문구 보완	제22조(수익증권의 판매) ①~②(기재생략) **③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당해 투자신탁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법시행령 제53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및 법령에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수익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수익증권의 판매) ①~②(현행과 동일) **③집합투자업자는 판매회사로 하여금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일부문구 보완	제28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①집합투자업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2항에 따른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이하, 기재생략) ②~④(기재생략)	제28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①집합투자업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2항에 따른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이하, 현행과 동일) ②~④(현행과 동일)
1.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일부문구 보완	제30조(투자신탁의 회계감사)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법 제88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 ②~③(기재생략)	제30조(투자신탁의 회계감사)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법 제88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 ②~③(현행과 동일)
1.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일부문구 보완	제36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기재생략) 1. (기재생략)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③ (기재생략)	제36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현행과 동일) 1. (현행과 동일)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222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③ (현행과 동일)
1.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일부문구 보완	제37조(보수) ①(기재생략)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매 1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3. (기재생략) ③(기재생략)	제37조(보수) ①(현행과 동일)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매 1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재무상태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3. (현행과 동일) ③(현행과 동일)

1.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일부문구 보완	제38조(선취판매수수료) ①(기재생략) 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 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의 100분의 2 범위 이내에서 클래스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한다.** 1. ~2. (기재생략) ③(기재생략)	제38조(선취판매수수료) ①(현행과 동일) 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 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에 다음의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 (현행과 동일) ③(현행과 동일)
1.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일부문구 보완	제43조(투자신탁의 해지) ①~③(기재생략) ④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⑤(기재생략)	제43조(투자신탁의 해지) ①~③(현행과 동일) ④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⑤(현행과 동일)
1.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일부문구 보완	제47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기재생략) 1. ~2. (기재생략) 3.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 ②~⑤(기재생략)	제47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현행과 동일) 1. ~2. (현행과 동일) 3.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시행령 제83조제2항에서** 정하는 때 ②~⑤(현행과 동일)
1.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일부문구 보완	제48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기재생략) ②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신설>**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기재생략)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신설>** 3. ~5. (기재생략) ③~⑥(기재생략)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제3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제3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⑨~⑩(기재생략)	제48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현행과 동일) ②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현행과 동일)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함)** 3. ~5. (현행과 동일) ③~⑥(현행과 동일)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제3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제3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⑨~⑩(현행과 동일)
1.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일부문구 보완	제50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저축약관"**<신설>**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제50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저축약관"**(연금저축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2. 오기정정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등) ①~③(기재생략) 1.~7. (기재생략) 8. Class P1 수익증권 : 소득세법 **제18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9. ~17. (기재생략) ④~⑤(기재생략)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등) ①~③(현행과 동일) 1.~7. (현행과 동일) 8. Class P1 수익증권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9. ~17. (현행과 동일) ④~⑤(현행과 동일)
2. 오기정정	제12조(수익자명부) ①~⑦((기재생략) 1. **일부**환매 결정에 의한 정상자산과 환매연기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2.~4. (기재생략)	제12조(수익자명부) ①~⑦(현행과 동일) 1. **부분**환매 결정에 의한 정상자산과 환매연기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2.~4. (현행과 동일)
2. 오기정정	제34조(이익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시효 등) ①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 ② (기재생략)	제34조(이익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시효 등) ①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 ② (현행과 동일)
2. 오기정정	제26조(환매연기) ①~⑦(기재생략)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시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기재생략)	제26조(환매연기) ①~⑦(현행과 동일)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2영업일전일**(15시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2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현행과 동일)

투자설명서 변경 내역

1.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2.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 →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97.5% VaR) 기준)
3.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4.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일부문구보완
5. 모펀드 투자대상자산(환매조건부 매수) 신설사항 반영
6. 투자전략 업데이트
7.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8. 운용전문인력 운용규모 업데이트
9. 집합투자업자에 관한사항 업데이트
10. 오기정정

항목	정정전	정정후
1.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수익률변동성: **16.96%(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 위험등급: 2등급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수익률변동성: **37.95%(97.5% VaR 모형의 일간 수익률 최대손실예상액)** 위험등급: 2등급

<table>
<tr><td>1.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td><td>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td><td>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u>- 최근현황갱신(기준일: 직전 회계연도)</u></td></tr>
<tr><td>1.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td><td>제3부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td><td>제3부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u>- 최근현황갱신(기준일: 직전회계연도 및 2024.10.13)</u></td></tr>
<tr><td>2. 투자위험등급 산정 기준 변경</td><td>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실제 수익률 변동성이란 <u>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를 의미합니다</u>.

<실제수익률 변동성 기준 위험등급 구간>
<table><tr><td>등급</td><td>1
(매우높은위험)</td><td>2
(높은위험)</td><td>3
(다소높은위험)</td><td>4
(보통위험)</td><td>5
(낮은위험)</td><td>6
(매우낮은위험)</td></tr><tr><td>수익률 변동성</td><td>25%초과</td><td>25%이하</td><td>15%이하</td><td>10%이하</td><td>5%이하</td><td>0.5%이하</td></tr></table></td><td>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실제 수익률 변동성: <u>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250)를 곱해 산출한 97.5% VaR 모형을 사용합니다.</u>

<실제수익률 변동성 기준 위험등급 구간>
<table><tr><td>등급</td><td>1
(매우높은위험)</td><td>2
(높은위험)</td><td>3
(다소높은위험)</td><td>4
(보통위험)</td><td>5
(낮은위험)</td><td>6
(매우낮은위험)</td></tr><tr><td>97.5% VaR</td><td>50%초과</td><td>50%이하</td><td>30%이하</td><td>20%이하</td><td>10%이하</td><td>1%이하</td></tr></table></td></tr>
<tr><td>3.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 개정사항 반영</td><td>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칸서스하베스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
(1)투자대상
<u><주석신설></u></td><td>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칸서스하베스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
(1)투자대상
<u>주1) 증권대여: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각 목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 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u>
<u>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u>
<u>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u></td></tr>
<tr><td>3.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 개정사항 반영</td><td>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 기타 투자위험
<u><신설></u></td><td>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 기타 투자위험
<u>증권대차거래 위험: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u></td></tr>
<tr><td>3.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 개정사항 반영</td><td>제2부 10. 매입, 환매 및 전환기준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u><표신설></u></td><td>제2부 11. 매입, 환매 및 전환기준
나. 환매
(1)수익증권의 환매
※ 환매가능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table><tr><td>중도환매 불가</td><td>중도환매 허용
(중도환매시 비용 발생)</td><td>중도환매 허용
(중도환매시 비용 발생X)</td></tr><tr><td>-</td><td>-</td><td>0</td></tr></table></td></tr>
</table>

4.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일부문구보완 / 5. 모펀드 투자대상자산(환매조건부 매수) 신설사항 반영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칸서스하베스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 (1)투자대상 2. 채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합니다. 다만, 상기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해당 자산이 3개월 유예기간 이내에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3.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신설>**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칸서스하베스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 (1)투자대상 2. 채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삭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합니다. 다만, 상기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해당 자산이 3개월 유예기간 이내에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3.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삭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12. 환매조건부매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4.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일부문구보완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동일종목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합니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합니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합니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동일종목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합니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합니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합니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삭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삭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4.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일부문구보완	제5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4) (기재생략)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신설>**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3) 및 (4)의 사유로 임의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신탁계약서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상환대금은 해지일 등 약정된 지급일에 맞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가입계좌 별로 상환대금을 지급합니다. (1)~(4) (기재생략)	제5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4) (현행과 동일)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3) 및 (4)의 사유로 임의해지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신탁계약서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합니다. 이때 상환대금은 해지일 등 약정된 지급일에 맞추어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가입계좌 별로 상환대금을 지급합니다. (1)~(4) (현행과 동일)
4.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일부문구보완	제5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하 기재생략) (3) 자산보관. 관리보고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사유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하 기재생략)	제5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하 현행과 동일) (3) 자산보관. 관리보고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사유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하 현행과 동일)
4.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일부문구보완	제5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신설>**	제5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함)**
6. 투자전략 업데이트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펀드의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펀드 자산을 주로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 합니다.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및 안정적인 목표수익률 달성을 목적으로 설정금액, 시장여건, 운용상의 기술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인 투자대상자산의 편입비중 조절 및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기본적인 섹터, 스타일의 적정비중을 유지하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지향** **- EPS(주당순이익)와 PER(주가수익비율)이 동시에 상승하며 강력한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주도섹터 비중의 적극적인 확대를 통하여 알파 창출** **- Buy&Hold 보다는 수익/위험 비율을 감안한 교체매매를 통한 알파 창출**

6. 투자전략 업데이트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 * 칸서스하베스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 **- 펀드의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펀드 자산을 주로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 합니다.** **- 운용스타일 : 철저한 기업분석을 바탕으로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된 종목을 선정하여 합리적 소수의 Contrarian적 사고에서 운용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 주식투자전략** **- 벤치마크(KOSPI)와는 다른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 철저한 기업분석에 기초한 종목선정을 하므로 Market Timing 운용전략을 지양합니다.** **- 따라서 투자자가 자산배분을 사전에 한 다음 당해 펀드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1)투자과정** **2) CONSUS Universe의 Valuation Parameter** **① 영업실적, 주당실적** **② 수익성, 안정성** **③ 주가관련지표** **④ 시장관련지표** **⑤ 회사규모 등의 기준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서 결정합니다.**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 * 칸서스하베스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 **- 기본적인 섹터, 스타일의 적정비중을 유지하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지향** **- EPS(주당순이익)와 PER(주가수익비율)이 동시에 상승하며 강력한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주도섹터 비중의 적극적인 확대를 통하여 알파 창출** **- Buy&Hold 보다는 수익/위험 비율을 감안한 교체매매를 통한 알파 창출**
	□ 채권 및 현금성자산 투자전략 **-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 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회사가 발행한 채권과 신용등급 A2(-) 이상의 어음에 주로 투자합니다.** **- 일반적으로 채권보다는 주식 매수를 위한 현금성 자산으로 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 파생상품 투자전략** **- 주식, 채권 등의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 주식 및 채권 관련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헷지전략을 주로 사용하며 매매차익 추구 목적의 거래도 가능합니다.**	**<삭제>** **<삭제>**
7.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7.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투자원금손실위험: (기재생략) ※ 은행 등에서 수익증권이 판매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예금과 달리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투자원금손실위험: (현행과 동일) ※ 은행 등에서 수익증권이 판매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예금과 달리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8. 운용전문인력 운용규모 업데이트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 최근현황갱신(기준일: 2024.09.30)**
9. 집합투자업자에 관한사항 업데이트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 규모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최근현황갱신(기준일: 최근 사업연도 기준)** 라. 운용자산 규모 **- 최근현황갱신(기준일: 2024.09.30)**
10. 오기정정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기타-개인연금: 소득세법 **제18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P1) : 소득세법 **제18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기타-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P1)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10. 오기정정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칸서스하베스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 (1)투자대상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서 제16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17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칸서스하베스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 (1)투자대상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서 제16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17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0. 오기정정	제2부 11. 매입, 환매 및 전환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P1) : 소득세법 **제18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제2부 11. 매입, 환매 및 전환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P1)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10. 오기정정	제2부 11. 매입, 환매 및 전환기준 나. 환매 (7)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시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따른 명령에 따라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제2부 11. 매입, 환매 및 전환기준 나. 환매 (7)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2영업일전일**(15시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2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따른 명령에 따라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내역

1.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2.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3. 운용전문인력 운용규모 업데이트

4. 오기정정

항목	정정전	정정후
1.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투자비용, 투자실적추이	투자비용, 투자실적추이 **-최근현황갱신(기준일: 직전회계연도 및 2024.10.13)**
2.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투자자유의사항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유의사항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주요투자위험 투자원금손실위험: (기재생략) ※ 은행 등에서 수익증권이 판매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예금과 달리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투자원금손실위험: (기재생략) ※ 은행 등에서 수익증권이 판매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예금과 달리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3. 운용전문인력 운용규모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운용전문인력 **-최근현황갱신(기준일: 2024.09.30)**
4. 오기정정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P1) : 소득세법 **제18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P1)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